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현대자산운용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 관	· 기관주의 · 과태료 70백만원
임 원 (1명)	· 주의 1명
직 원 등* (6명)	·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견책 상당) 1명 ·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5명

* 미등기임원 포함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투자자 및 판매사의 지시 등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금지 위반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자로부터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현대자산운용(주)(이하, ‘현대자산운용’)은 2009.6월, 판매사이자 투자자인 A로부터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의 설정 요청을 받고 ‘D’를 설정(설정원본 : 75억원) 하여 2009.6.29. ~ 2010.12.29. 기간 중 해당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동 펀드를 운용한 사실이 있다.

<관련법규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제4항제5호, 제6호

(2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위반

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8호의2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은행, 한국산업은행, 중소기업은행 등 법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현대자산운용은 2014.5.8.~2022.9.22. 기간 중 ‘㉠’ 등 3개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금융기관인 B 정기예금에 집합투자재산을 예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.

<관련법규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제4항제8호의2, 제241조제1항

(3)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

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8호의2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채무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%를 초과하여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현대자산운용은 2022.6.10. ‘㉠’ 및 ‘㉡’에 ‘C(주)’가 발행한 A2+등급 유동화전자단기사채를 각각 12.98억원, 8.99억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(각각 514.33억원, 343.08억원)의 2%(각각 10.28억원, 6.86억원)를 각각 2.70억원(0.52%p), 2.13억원(0.62%p)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으며,

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8호의2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는 경우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현대자산운용은 2021.10.19. ~ 2021.10.20. 기간 중 '㉔'에 B은행이 발행한 은행채와 B은행 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기업어음('D(주)' 등)을 합산하여 3,101억원 편입함으로써 자산총액(30,360억원)의 10%(3,036억원)를 65억원(0.21%p) 초과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.

<관련법규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, 제229조제5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제4항제8호의2, 제241조제2항제5호
3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7-19조제1항제1호, 제2항

(4)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

「자본시장법」 제238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7-35조제3항 및 <별표 18>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 중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, 발생단계, 개선단계,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이중 발생단계로 분류된 부도채권 등에 대해서는 원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 처리하여야 하는데도,

현대자산운용은 2020.12.21. 회사가 운용하는 '㉔'에 속한 자산 중 후순위 대여금 501억원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였음에도 회수가능성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원금을 상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.

<관련법규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238조제1항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260조제2항
3.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7-35조제3항, 별표 18

(5) 집합투자규약 위반 및 자산운용의 제한 위반

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1호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현대자산운용은 '㉠', '㉡', '㉢'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집합투자규약 등을 위반하여 운용한 사실이 있다.

(1) ㉠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, 2022.1.4. ~ 2022.10.19. 기간 중 총 173일에 걸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를 초과하여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였다.

(2) ㉡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특정 주식의 투자비중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% 이상으로 하여야 함에도, 2020.2.18. ~ 2022.9.22. 기간 중 총 99일에 걸쳐 자산총액의 90% 미만으로 동 주식에 투자하였다.

(3) ㉢ 집합투자규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의 범위에서 증권을 대여할 수 있음에도 2022.7.1.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을 초과 (위반비율 0.02%p)하여 대여하였다.

<관련법규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제8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제4항제1호